#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843

발의연월일: 2025. 1. 24.

발 의 자:조인철・박수현・주철현

박용갑ㆍ이건태ㆍ이해민

한정애 · 문진석 · 박민규

이개호 · 김문수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알고리 즉 기반 정보추천서비스(이하 "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"라 함)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.

그런데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여론에 편향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는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이용자의 확증편향이 강화되고,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등 민주적 공론장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임.

이에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

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선택 절차 등을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, 해당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. 또한, 해당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등).

#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4. "사회관계망서비스"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 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.
- 15. "알고리즘"이란 어떠한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전산상의 연산, 논리, 규칙 또는 절차 등을 말한다.
- 16. "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"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.

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3(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에 관한 약관 명시의무 등) ① 사회 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(이하 "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"라 한 다) 및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(이하 "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"라 한다)는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알고리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,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선택 절차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(이하 이 조에서 "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등"이라 한다)는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의4(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치) ①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주기적으로 제공, 알고리즘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용 의사여부를 추가적으로 묻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등은 자신이 제공하는 알고리즘정보추 천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와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6조제1항에 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의3.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1의4.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
- 1의5. 제2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 | 제2조(정의) ①          |
|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   | ,                  |
| 1. ~ 13. (생 략)      | 1. ~ 13. (현행과 같음)  |
| <u> &lt;신 설&gt;</u> | 14. "사회관계망서비스"란 정보 |
|                     | 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유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<u>를 말한다.</u>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| 15. "알고리즘"이란 어떠한 문 |
|                     | 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전산상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의 연산, 논리, 규칙 또는 절  |
|                     | 차 등을 말한다.          |
| <u> &lt;신 설&gt;</u> | 16. "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"  |
|                     | 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완전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정보통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신서비스를 말한다.         |
| ② (생 략)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| 제22조의3(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  |
|                     | 스에 관한 약관 명시의무 등)   |

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 는 자(이하 "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"라 한다) 및 「전기통 신사업법 .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(이하 "온라인 동 영상 서비스 제공자"라 한다) 는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알고리즘으로 운용된 다는 사실,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과 그 선택 절차 등을 미리 약 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관계망서 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(이하 이 조에서 "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등" 이라 한다)는 알고리즘정보추 천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할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 여야 한다. ③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

<신 설>

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4(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을 위한 조치) ① 사회관계망 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를 제 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의 이용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주기적으로 제공. 알고리즘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용 의사 여부를 추가적으로 묻는 등 이 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 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등 은 자신이 제공하는 알고리즘 정보추천서비스를 이용하지 아 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와 약 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 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76조(과태료) ① 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

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 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.

1. · 1의2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2. ~ 12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\_\_\_\_\_\_

1. · 1의2. (현행과 같음)

 1의3.
 제22조의3제2항에
 따른

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
1의4.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

1의5. 제2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자

2. ~ 1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